

[[별표 6]<개정 1986.6.19>

청소년호텔업시설기준(제15조관련)

(1종)

1. 객 실

- 가. 2인이상 6인이하의 수용에 적합한 상하단 침대식으로 하고, 총수용능력 60인이상일 것.
- 나. 3등급 관광호텔이상의 시설기준에 준하는 일반용 객실을 수용능력 20인마다 1실씩 층별로 균형있게 추가로 설치할 것.
- 다. 온돌객실은 호텔경영상 필요한 때에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객실수 및 객실면적은 "가"목의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2. 현 관

총수용인원 1인당 0.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.

3. 위생시설

객실별로 현대식 화장실 및 욕실설비를 갖추어 줄 것.

4. 부대시설

수용인원에 적합한 식당과 간이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있을 것. 다만, 청소년의 휴양이나 선도에 부적합한 유흥 오락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.

5. 기 타

- 가. 비상발전설비를 갖추어 줄 것.
- 나. 객실의 조명전원(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전원은 제외한다)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.

(2종)

1. 객 실

4인이상 10인이하로 청소년이용에 적합한 검소한 시설을 갖추어 줄 것.

2. 현 관

총수용인원 1인당 0.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.

3. 위생시설

층별로 수용인원에 적합한 현대식 공용화장실 및 욕실을 남·여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.

4. 부대시설

가. 수용인원에 적합한 자급식 식당과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설비를 갖출 것.

나. 식료품점이나 간이매점이 있을 것. 다만, 청소년의 휴양이나 선도에 부적합한 유흥오락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.

다. 실내·외에 각 1석이상의 운동오락시설과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이상의 대지를 확보할 것.

라. 수용능력에 적합한 집회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회의장시설을 갖출 것. 다만, 다목적 실내운동오락시설장이 회의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었을 때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5. 입지조건 및 건축구조

관광지 또는 국·도립공원과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승지로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3층이하의 건물일 것.